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- 00737호

시행일자 2022. 4. 2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(2건) 시행 안내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-1179(2022.04.22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(2건)가 개정(제2급 감염병으로 신고 필요)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주요 개정내용

- 1)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 제1호, 8호, 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설
- 2)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 제2급감염병 [2-22]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설

나. 시행일 : 2022. 4. 25.

다. 기타 문의사항 :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(043-719-7979, 7790)

※ 붙임 : 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
2.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 고시 개정안 1부.
3. 「감염병의 진단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